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이기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3501 번 호

발의연월일: 2024. 9. 2.

발 의 자:이기헌·박 정·염태영

박홍근 • 오세희 • 김문수

김남근 • 서영교 • 박정현

이용선 · 김남희 · 박주민

이원택 · 황정아 · 김용만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 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 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 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륜・경정법」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1조(「경륜·경정법」의 개정) 경륜·경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피성년후견인
- 제2조(「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관광진흥법」의 개정)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5조(「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7조(「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8조(「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9조(「저작권법」의 개정)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7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경륜·경정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선수ㆍ심판 및 용구의 등	제7조(선수・심판 및 용구의 등
록 등) ① 경주에 선수로 출전	록 등) ①
하거나 심판으로 종사하려는	
사람은 진흥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록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	1. 피성년후견인
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	
<u>람</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제5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	
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	
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u><삭 제></u>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관광진흥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제7조(결격사유)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	
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	
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u>아니한 자</u>	
3.・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제9조(결격사유 등) 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	
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사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27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	
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	
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	<u><삭 제></u>
권되지 아니한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제13조(결격사유 등) 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	
행인 또는 편집인이 되거나 인	
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	
임자가 될 수 없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사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u><</u> 삭 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제20조(결격사유 등) 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	
람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	
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사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저작권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
가 등) ① ~ ⑥ (생 략)	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⑦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	
대리중개업(이하 "저작권위탁	
관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u> 삭 제>
아니한 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⑧ ~ ⑫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